

수원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681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6816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20071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김충환, 박혜성, 이다미, 윤아련

변론종결 2022. 7. 6.

판결선고 2022. 8. 1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20071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2019. 1.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3. 14. 접수 제137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면 제16행의 “을 제2, 3호증의”를 “을 제2, 3, 9, 10호증의”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하정, 판사 진현지, 판사 김수정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 62.1㎡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 지상

연와조스라브 3층 주택

1층 43.77㎡

2층 43.77㎡

3층 9㎡

지층 47.27㎡

끝

